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8. 21 선고 2018가단4169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

피고1. A

2. B

변론 종결2018. 7. 3.

판결 선고2018. 8. 21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,526,012원 및 그 중 42,207,873원에 대하여 2015. 10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인정사실

1) 원고는 2007. 2. 20. 보험계약자 피고 A과 주식회사 에치티에치에 대한 물품(택배) 위수탁계약상 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한 이행(지급)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,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보험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2)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위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(2008가단166686)를 제기하여 2008. 7. 4. 위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청구인용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,656, 1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. 4. 17.부터 2008. 5. 21.까지는 연 1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)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구상금 채무의 일부를 상환받았다.

1	2009. 9. 29.	원금	10,239,189원
2	2011. 4. 27.	원금	17,206,020원 ¹⁾ 변제금액은 18,000,000원이지만, 총당순서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비용에 793,980원을 우선 총당하고, 나머지 17,206,020원(=18,000,000원-793,980원)을 원금에 총당하였다.
3	2011. 7. 22.	원금	3,020원
합계			27,448,229원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판단

1) 원고가 상환받은 금원을 각각 구상금 원금에 총당하면,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. 9. 30.

기준으로 원금 42,207,873원, 지연손해금 합계 76,318,141원이 남게 된다.

1	69,656,102	19	35	2008.4.17. ~ 2008.5.21.	1,269,077
2	69,656,102	20	496	2008.5.22. ~ 2009.9.29.	18,931,193
3	59,416,913	20	575	2009.9.30. ~ 2011.4.27.	18,720,397
4	42,210,893	20	86	2011.4.28. ~ 2011.7.22.	1,989,116
5	42,207,873	20	1,531	2011.7.23. ~ 2015.9.30.	35,408,358
합계	76,318,141				

2)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잔존 구상원리금 합계

118,526,012원(=42,207,873원+76,318,141원) 및 그 중 구상원금 42,207,87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. 10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범위 내인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피고들은, 원고가 피고 B 소유의 부동산 지분을 가압류하고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소송에서 18,000,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나머지 구상금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주장한다.

나. 살피건대, 갑 제7 내지 10호증,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,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① 원고는 피고 B 소유인 광주 남구 D아파트 제1동 401호(이하 '이 사건 아파트'라 한다) 1/2 지분을 가압류하고, 피고 B와 공유자 E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40197호로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, ② 그 소송에서 '피고 B가 원고에게 18,000,000원을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고,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는 즉시 가압류 등의 집행해제를 한다'는 내용의 2011. 2. 10.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, ③ 피고 B가 2011. 4. 27. 원고에게 18,000,000원을 지급한 사실, ④ 이에 원고는 변제받은 18,000,000원을 2011. 4. 27. 당시 이미 발생한 집행비용 793,980원과 구상원금 17,206,020원에 각각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와 같은 종전 소송은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공유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경매분할을 구하는 소송이고, 그 소송의 화해권고결정 결정사항에 포함된 '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.'는 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분할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나머지 이익을 포기한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취지가 아니다. 피고 B가 위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피고들의 구상금채무가 모두 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. 그 밖에 앞서 인정한 27,448,229원의 상환내역 이외에 피고들이 추가로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김동국

1) 변제금액은 18,000,000원이지만, 총당순서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비용에 793,980원을 우선
충당하고, 나머지 17,206,020원(=18,000,000원-793,980원)을 원금에 충당하였다.